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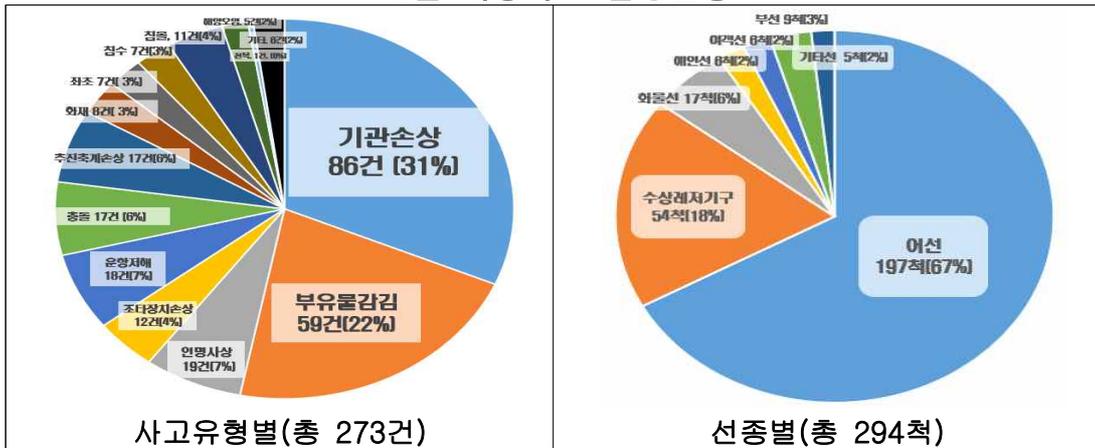
1 해양사고 발생 현황(2019~2023)

□ 최근 5년간 10월중 동해해역 총 해양사고 발생 건수: 273건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사고건수	193	174	182	173	232	215	204	193	251	273	197	247	2,534 (월 평균 211건)

- (유형별/273건) 기관손상 86건, 부유물감김 59건, 인명사상 19건, 운항저해 18건, 추진축계손상 17건, 충돌 17건, 조타장치손상 12건, 침몰 11건, 화재 8건, 좌초 7건, 침수 7건, 해양오염 5건, 전복 1건, 기타 6건
- (선종별/294척) 어선 197척*, 일반선박 43척**, 수상레저기구 54척
- * 연안 116척 / 근해 50척 / 뱃시 15척 / 기타 16척
- ** 여객선 6척 / 화물선 17척 / 예인선 6척 / 부선 9척 / 기타 5척

<10월 해양사고 발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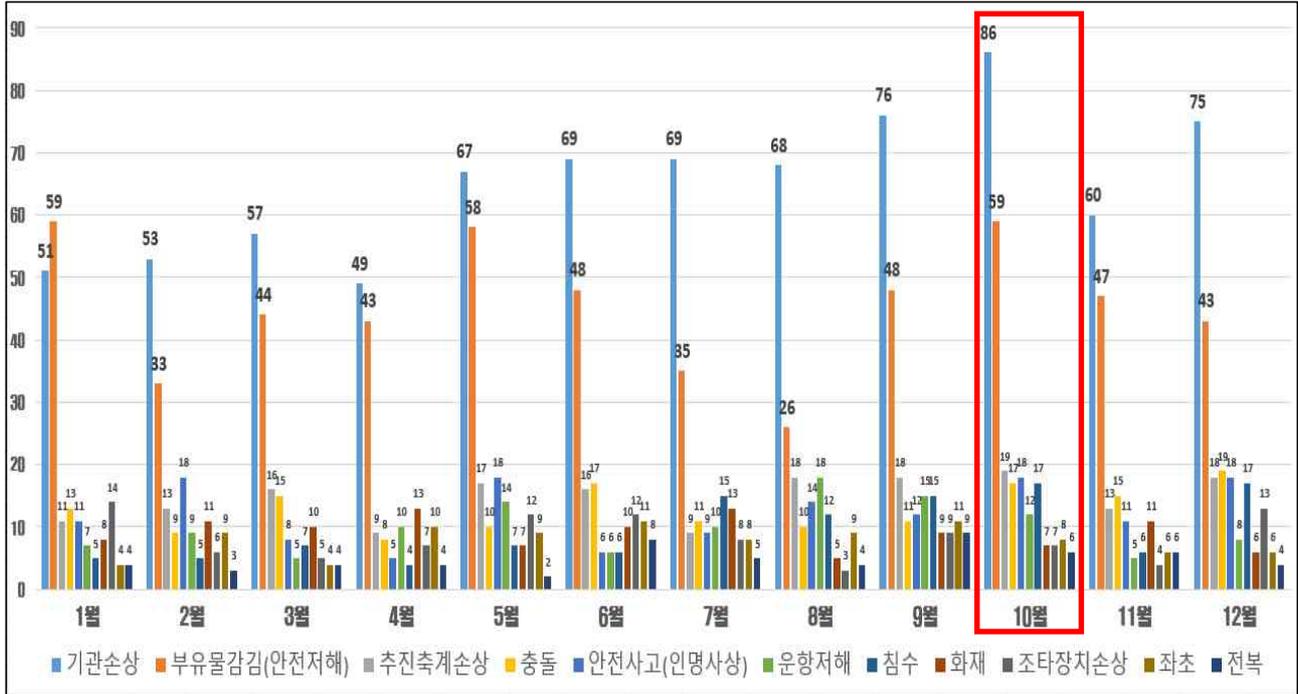


- (해양사고 특징) 10월의 해양사고 발생건수(273건)는 연중 최다 발생하며, 이 중 충돌(17건)은 월 평균(10건) 대비 대폭 증가(170%)함.
 - 충돌사고는 항해 중 줄음운항, 전방경계 소홀, 지피에스플로터 맹신 및 부적절한 피항동작 등에 의해 발생함
 - 항해당직자의 철저한 전방경계와 올바른 항법준수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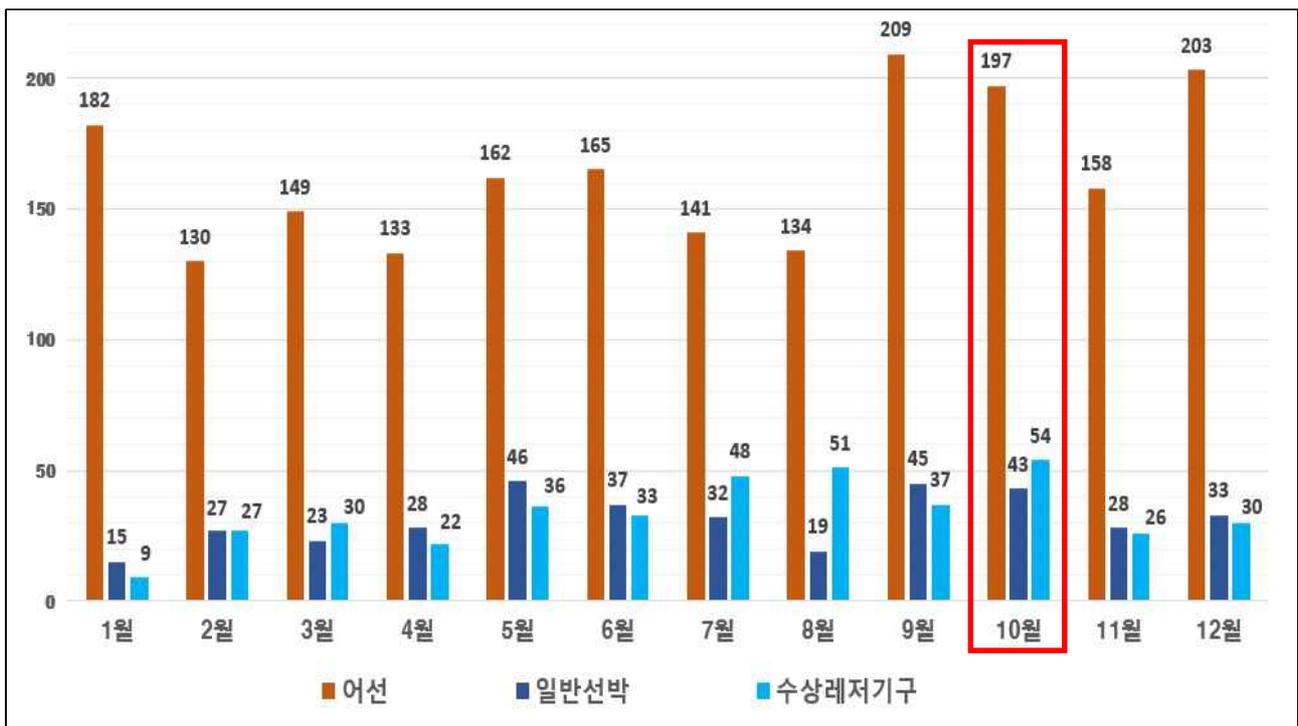
10월 안전운항 실천구호

전방경계와 항법준수를 잘하여 내 생명과 선박을 지킵시다

1. 주요 사고유형별 월별 사고(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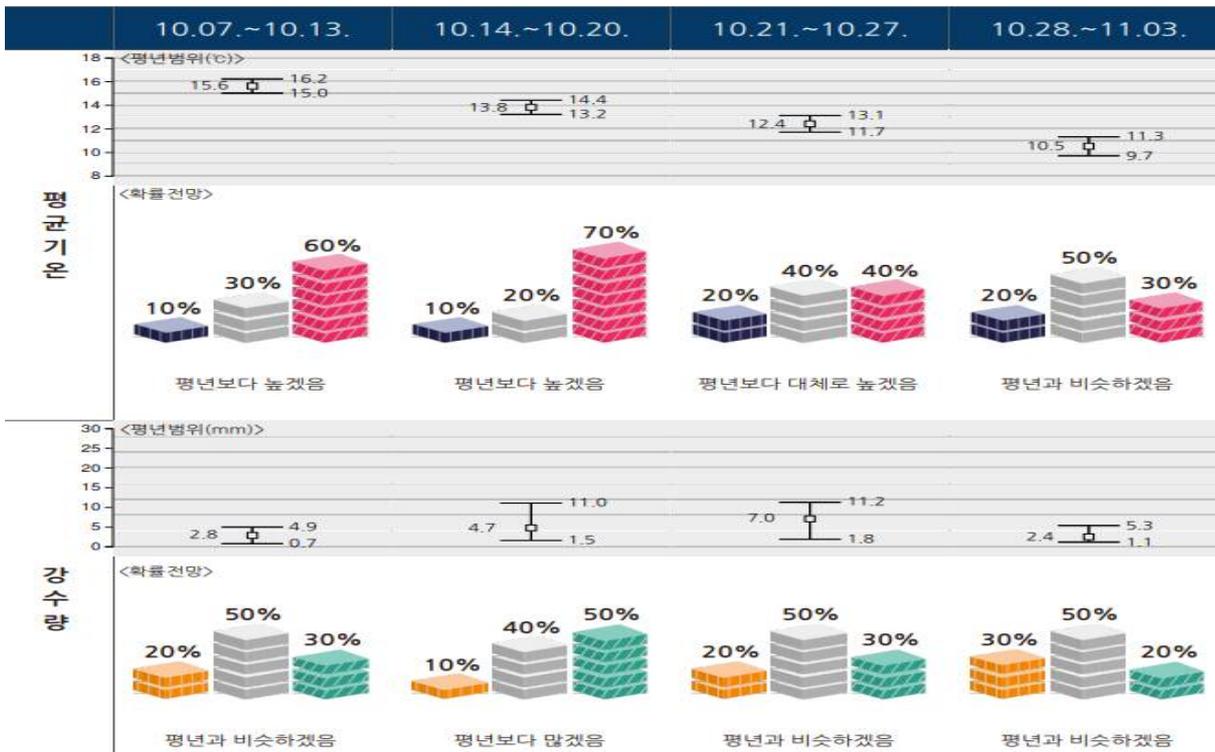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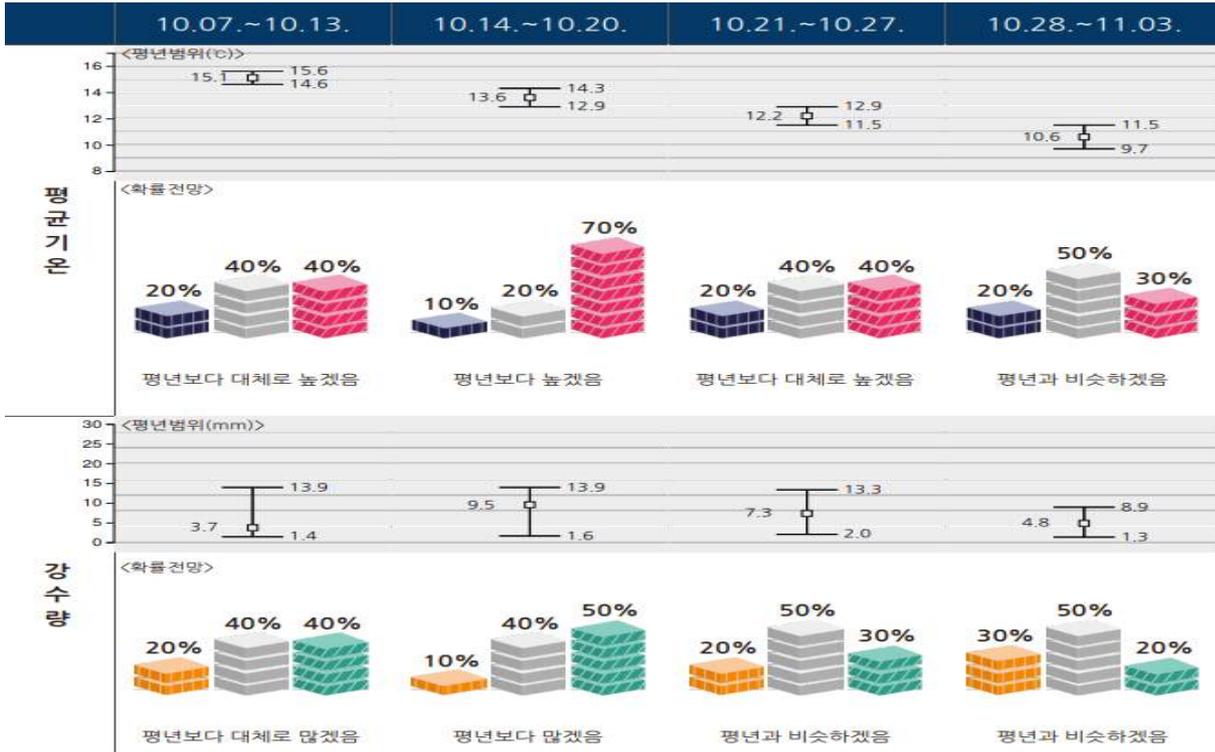


2. 어선, 일반선박 및 수상레저기구 월별 사고(척수)



3

10월 기상정보(출처: 기상청 예보)



사건명		어선 A호·어선 B호 충돌사건
사 건 개 요	선박	A호: 어선, 6.37톤, 강화플라스틱(FRP), 승선원 5명 B호: 어선, 4.93톤, 강화플라스틱(FRP), 승선원 2명
	일시 장소	2023년 10월 22일 18시 26분경 / 북위 35도 44분 33초, 동경 129도 31분 53초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대본항 북방파제등주로부터 방위 약 093도, 거리 약 2.2해리 해상)
	피해	B호: 기관실 부근 외판 0.4 x 0.5미터 손상 및 조타기 유압탱크 파손
	기상	날씨는 맑음, 풍향은 방위 274도, 초속 약 8.2미터, 파고는 약 0.7미터
경위 원인	<p>어선 A호는 2023년 10월 22일 15시 27분경 감포항을 출항하여 감포항 동방 약 2.5해리 해상의 조업지에 도착하여 자망을 양망하던 중 같은 날 18:00경 선수에 작업등 4개, 선미에 작업등 2개를 점등하였고, 자망을 투망할 장소를 찾기 위해 침로 약 180도, 속력 약 10노트로 항행하던 중 선수 작업등의 불빛으로 인하여 전방 시야가 제한되었음에도 감속하지 아니하고 조타실 우현 창문을 통하여 투망할 장소를 찾느라 전방을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자기 선박의 전방에서 조업 중인 어선 B호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였으며, 어선 B호는 같은 날 15:44경 전촌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8:00경 두 번째 조업지에 도착한 후 어업등은 점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갑판의 작업등만 점등한 채, 주기관 클러치를 중립에 두고 선장은 조타실에서 나와 선수 우현 측에 설치된 양망기를 조작하여 자망을 양망하던 중 충돌 약 15초 전에 자기 선박의 우측에서 접근하는 어선 A호를 발견하였으나 당연히 피해갈 것으로 생각하여 별다른 조치 없이 양망을 계속하다 충돌하였다.</p> <p>이는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어선 A호가 항행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전방에서 어로 작업 중인 어선 B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어선 B호가 조업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다.</p>	
교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항해당직자는 전방 시야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야간에 선수 작업등을 켜 채로 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항해당직자는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는 반드시 레이더를 이용하여 지속적인 관측을 하여야 한다. 3. 어선 선장은 조업 중에도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4. 어선 선장은 조업 중 항해 여부와 관계없이 야간에는 어업등을 점등하고 주간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